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3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7,070,510원, 2,103,300원의 각 부과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6,374,070원의 부과처분 중 65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1,896,120원의 부과처분 중 19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495,820원의 부과처분 중 51,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64,900원의 부과처분 중 6,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364,230원의 부과처분 중 37,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455,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원의 부과처분 중 4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189,610원의 부과처분 중 19,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49,580원의 부과처분 중 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6,490원의 부과처분 중 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단위: 원)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과세대상 / 세목		[redacted]시 [redacted]구 B 건물 신축	[redacted]시 [redacted]구 B 토지 지목변경	싸이로 신축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
취득세	본세	35,352,580	10,516,520	2,750,000	360,000
	일반무신고가산세	7,070,510	2,103,300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6,374,070	1,896,120	495,820	64,900
지방교육세	본세	2,020,140	0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364,230	0	0	0
농어촌특별세	본세	2,525,180	1,051,650	275,000	36,000
	납부불성실가산세	455,280	189,610	49,580	6,490
소계		54,161,990	15,757,200	3,570,400	467,390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가. 원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건물 신축,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탱크제조,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11. 13. 설립되었다. 원고는 플라스틱탱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8. 8. 설립되었다.

2) 원고와 D(원고의 설립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8. 8.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8. 10. 22. 원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한 사람이다)은 2014. 11. 3. [redacted]시 [redacted]구 E 임야 16,709㎡(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매매대금 각 8억 8,5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2014. 12. 29. 분할 전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해 원고와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E 토지에서 2015. 2. 23.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임야 1,613㎡, G 임야 5,616㎡가 각 분할되어 분할 전 E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810㎡로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redacted]시 [redacted]구 H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공장 1층 900㎡(1동), 990㎡(2동, 이하 위 두 동의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2015. 7.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토지는 2015. 8. 1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처인구청장의 취득세 등 감면결정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는 2015. 7. 내지 2015. 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5. 7.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7.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달라."라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공문을 보냈다.

2) 원고는 2015. 9. [redacted]구청장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각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redacted]구청장은 "C의 2012년~2015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인한 결과 매입액이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한 내역은 없었으며, 매입액이나 매출액의 비중이 큰 동일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 C와 원고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5.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1,262,592,499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25,826,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처인구청장은 원고에게 ① 2015. 9. 15. 납세자를 원고, 과세원인을 원시취득, 과세대상을 이 사건 건물 신축, 납부세액을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 신고납부기한을 2015. 9. 21.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② 2015. 9. 17. 납세자를 원고, 과세원인을 지목변경,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2,335㎡) 지목변경, 납부세액을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 신고납부기한을 2015. 9. 21.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과 위 지목변경에 관해 당초세액을 10,516,520원, 감면세액을 10,516,520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각 작성 ·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5)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싸이로를 신축하고, 2015. 10. 22.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비인 호이스트 크레인을 취득하였고, [redacted]구청장에게 2016. 12. 2. 위 싸이로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137,500,000원으로, 2016. 12. 5. 위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18,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싸이로 신축,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결정

1)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았으나 추후 기존법인 사실상 폐업 및 인적설비 이동으로 원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① 이 사건 건물 신축, ②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③ 싸이로 신축, ④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본세 합계 54,887,070원, 가산세 합계 17,558,100원, 총 산출세액 72,445,170원(= 54,887,070원 + 17,558,100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6. [redacted]도지사에게 "기존 사업장의 위치와 현재 사업장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존의 공장 물적설비는 이전하지 않았고 현재 폐업하지 않음. 단지 인적설비의 일부 이전으로 감면대상 제외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3) [redacted]도지사는 2017. 5. 16. "시설설비 이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임직원 일부(5명)가 원고에 입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7. 5. 17.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선행 거부처분 및 선행판결 선고

1) 원고는 2014. 12. 26.부터 2017. 6. 19.까지 분할 전 E 토지 중 1/2 지분 등을 취득(이하 '분할 전 E 토지 지분 등 취득'이라 한다)하고 처인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으로 합계 129,525,3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8. 7. [redacted]구청장에게 원고의 분할 전 E 토지 지분 등 취득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구청장은 2017. 10. 18. 원고에게 원고의 설립이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선행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선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8구합63687)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23.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C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원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① 원고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는 D으로, D은 당시 C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50%의 주식을 소유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② 원고가 C의 인력을 채용하고, C의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관계가 홍보되어 있고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C가 수행한 사업과 연속되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유력한 징표이다.

③ 원고가 2014년경 설립됨과 동시에 C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의 매출은 상승하였다. 원고의 매출이 2015년 이후로 보다 급격히 상승하여 2016년경에는 기존 C의 매출을 초과하고 있긴 하나 이를 원고의 창업으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매출처, 주업종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구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업종의 분류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고와 C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분류번호 22232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업태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C의 업태와 일부 다르긴 하나, 여전히 주업종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으로 C의 기존 주업종과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업종 외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는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4) 원고가 선행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8누70068)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원고의 ① 이 사건 건물 신축, ②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③ 싸이로 신축, ④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본세, 가산세 합계 73,956,980원(= 54,161,990원 + 15,757,200원 + 3,570,400원 + 4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 과세대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싸이로 신축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
취득세	본세	35,352,580[1]	10,516,520[2]	2,750,000[3]	360,000[4]
	일반무신고가산세	7,070,510[5]	2,103,300[6]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6,374,070[7]	1,896,120[8]	495,820[9]	64,900[10]
지방교육세	본세	2,020,140[11]	0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364,230[12]	0	0	0
농어촌특별세	본세	2,525,180[13]	1,051,650[14]	275,000[15]	36,000[16]
	납부불성실가산세	455,280[17]	189,610[18]	49,580[19]	6,490[20]
소계		54,161,990	15,757,200	3,570,400	467,390

1) = 과세표준 1,262,592,490원 × 0.028,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 과세표준 525,826,000원 × 0.02
3) = 과세표준 137,500,000원 × 0.02
4) = 과세표준 18,000,000원 × 0.02
5) = 본세 35,352,580원 × 0.2
6) = 본세 10,516,520원 × 0.2
7) = 본세 35,352,580원 × 0.0003 × 601일(2017. 3. 16.부터 2018. 11. 6.까지의 기간,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원고에게 선행판결이 선고된 것은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조특법 제120조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과 2015. 9. 17.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해 취득세 전부를 면제하는 감면결정을 했고, 2016. 12. 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감면세액 추징결정을 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과세예고가 잘못되었다는 경기도지사의 결정

---

8) = 본세 10,516,520원 × 0.0003 × 601일
9) = 본세 2,750,000원 × 0.0003 × 601일
10) = 본세 360,000원 × 0.0003 × 601일
11) = 과세표준 1,262,592,490원 × (0.028 - 0.02) × 0.2
12) = 본세 2,020,140원 × 0.0003 × 601일
13) = 과세표준 1,262,592,490원 × 0.02 × 0.1
14) = 취득세 본세 10,516,520원 × 0.1
15) = 과세표준 137,500,000원 × 0.02 × 0.1
16) = 과세표준 18,000,000원 × 0.02 × 0.1
17) = 본세 2,525,180원 × 0.0003 × 601일
18) = 본세 1,051,650원 × 0.0003 × 601일
19) = 본세 275,000원 × 0.0003 × 601일
20) = 본세 36,000원 × 0.0003 × 601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및 경기도지사 등 과세관청의 2차례 이상 확고한 취득세 감면 결정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가로 부동산과 각종 기계 등을 취득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과세처분 불복절차의 결정 위반

과세전적부심에서 채택 결정이 된 똑같은 사항에 관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 불복절차의 결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적용 법령의 결정

(1)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구 조특법 제120조가 삭제되었다.

대신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은 제58조의3을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2016. 12. 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제1호), 2016. 12. 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본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단서)고 규정하였다.

개정 지특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제1조 본문),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제3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4조).

(2) 원고는 2014. 8. 8. 설립되어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며, 싸이로를 신축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4가지 취득을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이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던 것인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에 관하여는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취득세 면제의 요건을, 같은 항 단서는 면제받은 세액 추징의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의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취득세 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각 참조), 처인구청장이 2015. 9.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각 취득세 면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 뿐,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0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과 국세기본법이므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자신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선행판결의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원고의 설립은 C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① [redacted]구청장이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2015. 9. 15.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해 납부세액을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2015. 9. 17.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지목변경에 관해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과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각 작성 · 교부한 것, ② 경기도지사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채택결정을 한 것은 모두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에 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C와 동종의 영업을 하면서 2015년 이후로 매출을 늘려나갔고, 원고의 매출 증가에 반비례하여 C의 매출이 감소하여 C는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C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C의 사업을 승계하고 C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한 것은 원고와 C를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던 D의 의도에 기한 것이다. 2015. 9. 당시 처인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C와 원고의 매입 · 매출을 살펴볼 때 C의 급격한 매출 하락이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C와 원고의 매입·매출처의 중복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신청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2) 가사 [redacted]구청장이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나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참조).

(3) [redacted]도지사를 취득세 등의 '과세관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redacted]도지사가 한 채택결정의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 원고가 C의 사업을 승계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추후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바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유보적 판단이다.

다)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C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C의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D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었던바, 가사 앞서 본 처인구청장 또는 [redacted]도지사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신뢰에 기한 행위 유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의한 취득일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은 각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7. 21.이고, 싸이로 신축에 의한 취득일은 2015. 8. 10.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 견해표명은 그보다 후인 2015. 9.에야 있었다.

원고의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일은 2015. 10. 22.이기는 하나, 원고는 제조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호이스트 크레인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과 호이스트 크레인을 취득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redacted]구청장 또는 [redacted]도지사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 등 취득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는데 그 다른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별소에서 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다른 부동산 등의 취득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 불복절차의 결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때문이다. 불가변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당해처분행정청을 구속하고 설사 거기에 하자가 있어도 그 행정청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상의 쟁송에 대한 결정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와 형식적으로는 쟁송을 판정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권리관계의 판단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쟁송의 결정재결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확인적 행위 등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같이 세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처분의 사전 통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르게 될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검토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전에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일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이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행위도 행정행위이다)와 달리 아직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통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행위도 없었으므로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동일 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29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935 판결 참조)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일반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1)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취득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의무의 대상은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구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된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5. 9. 15.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1,262,592,499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25,826,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처인구청장이 원고에게 ① 2015. 9. 15. 납세자를 원고, 과세원인을 원시취득, 과세대상을 이 사건 건물 신축, 납부세액을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 신고납부기한을 2015. 9. 21.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② 2015. 9. 17. 납세자를 원고, 과세원인을 지목변경,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2,335㎡) 지목변경, 납부세액을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각 0원, 신고납부기한을 2015. 9. 21.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과 위 지목변경에 관해 당초세액을 10,516,520원, 감면세액을 10,516,520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각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각 취득세에 관해 [redacted]구청장에게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다만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그와 동일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해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을 2017. 3. 16.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1. 6.까지 601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통지받은 2017. 5. 17.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1. 6.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운데 2017. 3. 16.부터 2017. 5. 16.까지 62일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2017. 5. 17.부터 2018. 11. 6.까지 539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바,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아래 표(단위: 원)와 같다.

세목 \ 과세대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싸이로 신축	호이스트 크레인 취득
취득세	본세	35,352,580	10,516,520	2,750,000	36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657,550[21]	195,600[22]	51,150[23]	6,690[24]
지방교육세	본세	2,020,140	0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37,570[25]	0	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농어촌 특별세	본세	2,525,180	1,051,650	275,000	36,000
	납부불성실가산세	46,960[26]	19,560[27]	5,110[28]	670[29]
소계		40,639,980	11,783,330	3,081,260	403,360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가운데 앞서 본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과 일반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창구

판사 최윤영

---

21) = 본세 35,352,580원 × 0.0003 × 62일
22) = 본세 10,516,520원 × 0.0003 × 62일
23) = 본세 2,750,000원 × 0.0003 × 62일
24) = 본세 360,000원 × 0.0003 × 62일
25) = 본세 2,020,140원 × 0.0003 × 62일
26) = 본세 2,525,180원 × 0.0003 × 62일
27) = 본세 1,051,650원 × 0.0003 × 62일
28) = 본세 275,000원 × 0.0003 × 62일
29) = 본세 36,000원 × 0.0003 × 62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5. 12. 29.>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1

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5. 5. 18.>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끝.